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미흡” 결과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 +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총 기간 2년의 연구개발과제 및 1차년도 수행결과 평가

1차년도 보고서 제출 및 서면평가 결과: 평균 51.86 점 + 평가 기준 - “미흡” 단계 (기준

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 기준에 “매우 미흡” 또는 “매우 불량”도 있음) + 이의신청

및 재차 중간발표평가 시행 및 평가 결과: 평균 53.26 점 + 평가 기준 - “미흡” 단계 (기

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2. 전문기관의 제재처분

평가결과 “미흡” 이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통지 + 산학협력단에 대해 사업비 전액

환수 + 연구책임자에 대해 1년 참여제한 처분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별표 6]

사유별 제재 기준

제재사유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 기간 ⁶⁾			출연금환수 ¹⁾
	1회	2회	3회 이상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가. 중간평가 결과 "미흡" 또는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1년	1년	1년	
나. 중간평가 결과 "매우 미흡" 또는 최종평가 결과 "매우불량"인 과제	3년	3년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정당한 사유 ²⁾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 ⁷⁾ 한 경우 ³⁾	3년	3년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⁴⁾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³⁾	2년	2년	2년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2년	2년	추가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⁵⁾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초과 10년 이내	
라.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	5년	7년	10년	

판단이유: 판결문에서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어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오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실무적 포인트 - 위 별표6에서 1 및 2항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가항과 나항으로 구분하고, 6항에서는 가, 나, 다항으로 구분하여 그 경중에 비례하는 참여제한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을 규정함. 출연금환수 항목에서는 “~ 전액 이내”로 규정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환수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예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전액 환수” 처분을 하였다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제재처분에 해당함.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행정소송,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기술료, 대응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